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012호

나.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찬성의원 36명)

다. 발의일자 : 2019년 8월 23일

라.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2. 제안이유

- 우리 시 일부 조례에 남아있는 어렵고 어색한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일괄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또는 통용되는 한자어로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 쓰이는 대표적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인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를 각각 “그 밖에” 또는 “그 밖의”와 “해당”, “회의에 부치다”로 순화함.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일부 서울시 조례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과 한자어를 국민정서에 부합하도록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서울시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발의되었음.

나. 일본식 한자어의 정의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규정된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여 다음의 일본식 용어와 한자어를 정비해 왔음.

〈법제처 일본식 용어 정비 목록〉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가도(假道)	임시도로	구좌(口座)	계좌	시말서(始末書)	경위서
가료(加療)	치료	납골당(納骨堂)	봉안당	엽연초(葉煙草)	잎담배
가식(假植)	임시식재	녹비(綠肥)	푼거름	일부인(日附印)	날짜도장
갑상선(甲狀腺)	갑상샘	미강(米糠)	쌀겨	주말하다(朱抹)	붉은선으로 자유다
거래선(去來先)	거래처	미불(未拂)	미지급	지득(知得)하다	알게 되다
건정(鍵錠)	잠금장치	부락(部落)	마을	지참(遲參)	지각
거기(擧起)하다	규정하다	불입(拂入)	납입	침목(枕木)	받침목
견습(見習)	수습	불하(拂下)	매각	품신(稟申)	건의
계리(計理)	회계처리	사리(砂利)	자갈	하구언(河口堰)	하구둑
곤색(紺色)	감색	사찰(査察)	조사	행선지(行先地)	목적지
구배(勾配)	경사	시건(施鍵)	잠금		

- 일본어에서 한자를 읽는 방법은 음독(音讀, 음으로 읽는 것)과 훈독(訓讀, 뜻으로 읽는 것)이 있는데, 훈독은 한자로 적으면서 음으로 읽지 않고 한자의 뜻으로 읽는 용어로 순수한 일본어라 할 수 있음¹⁾.
-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 “가도(假道)”, “계리(計理)” 등이 대표적 일본식 한자어임.

〈법제처가 지정한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순화안
가도	임시 도로, 임시 통로
계리하다	회계처리하다, 처리하다
공하다	제공하다, 쓰이다, 사용되다
기타	그 밖의, 그 밖에
기하다	도모하다, 꺾하다, ~를 바탕으로 하다, 기하다
부착하다	붙이다, 부착하다
당해	해당, 그
명하다	처분을 하다, 명하다
미불	미지급
부의하다	회의에 부치다, 회의에 올리다
~에 불구하고	~에도 불구하고
산입하다	산입(算入)하다, 포함하다, 포함하여 계산하다
응(應)하다	따르다, 응답하다, 받다, 응하다
자(者)	사람, 자

-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뜻으로 번역해야 하는 용어를 음으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로 변모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1)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나 용어를 상당수 정비하였으나,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정비가 필요함.

다.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조례안은 법제처가 지정한 일본식 한자어 중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를 각각 “그 밖에” 또는 “그 밖의”와 “해당”, “회의에 부치다”로 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 642건(조례안 발의일자 기준) 중에서 201건을 정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대상 조문은 432건임[참고자료1].
- 일본식 한자어의 사용은 자치법규의 해석과 이해를 어렵게 하므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대상 중 일부 오기되거나 누락된 조문과 자구가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 발의 후 제정된 4건의 조례(2019.9.26.제정)를 추가 정비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조례안	수정의견
<p>제11조(「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리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p> <p>제58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타”를 “등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2의 이용률 구분란의 “기타 이용율”을 “그 밖의 이용율”로 한다. 별표 5의 기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표 (4)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 것”으로 하며, 같은 표 (3)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 것”으로 한다.</p> <p>제126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부익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u><신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1조(「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리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p> <p>제58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안과 같음)</p> <p>별표 2의 이용률 구분란의 “기타 이용률”을 “그 밖의 이용률”로 한다. 별표 5의 표 용도란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을 각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로, “벽이 기타인 것”을 각각 “벽이 그 밖의 것인 것”으로 하며, “지붕이 기타인 것”을 “지붕이 그 밖의 것인 것”으로 한다.</p> <p>제126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안과 같음)</p> <p><u><삭제></u> 제12조제3항 중 “그 밖에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p> <p>제203조(「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익한”을 “회의에 부치는</p>

	안건”으로 한다.
<신설>	제204조(「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신설>	제205조(「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신설>	제206조(「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 범 준	02-2180-8058

[참고자료 1] 개정대상 조례와 조문

연번	조번호	개정대상 조례	개정 조문
1	제2조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2	제3조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3	제4조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호
4			제10조제1항제2호
5			제10조제2항
6	제5조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7	제6조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다목
8			제3조제4호
9			제4조제1항제3호
10			제6조제2항제4호
11	제7조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
12	제8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제9항
13	제9조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14	제10조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15	제11조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9조제2항
16			제10조제2항제1호라목
17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18			제37조제3항제4호
19	제12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20			제4조제2호가목 및 나목
21	제13조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6조제7호
22	제14조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2호
23			별지 서식 첨부서류란
24	제15조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9조제4호
25			제18조제3항제4호
26			제19조제6호
27			제20조제6호
28	제16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제3호
29	제17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제4항
30			별표 1 제2호의 제목
31	제18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32	제19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5조제2호
33	제20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호
34			제11조제3호
35			별제 제1호 서식
36	제21조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제4호
37			제7조제3항제1
38	제22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제2항
39	제23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4조제1항제5호
40			제30조
41			제31조
42	제24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43			별표 2의 제1호나목
44			별표 2의 제2호가목(2)
45	제25조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9조제2항

연번	조번호	개정대상 조례	개정조문
46	제26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0호
47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48	제27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2조제2항제1호
49			제3조의2제1항
50			제9조제2항
51			제9조제2항
52			제10조제3항
53			제13조제1항 전단
54	제28조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제2호
55	제29조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호
56			제12조제2항제4호
57			제13조제2항제6호
58	제30조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59	제31조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6호
60			제13조제3호
61			제16조제1호
62			제16조제2호
63			제16조제5호
64			제6장의 제목
65	제32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6호
66			제2조제6호
67	제33조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3호
68			제15조제1항제3호
69	제34조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4호
70	제35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제6조제2호
71			제12조제3항제3호
72	제36조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호
73			제9조제5항
74	제37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3항
75	제38조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76			제5조제2항제3호
77			제8조제6호
78			제9조의2제3항 -> 제10조제3항
79	제39조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제7조제2항제5호
80	제40조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9조제4호카목
81	제41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7조
82	제42조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제7조제5항 단서
83	제43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
84			제1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85	제44조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호
86			제9조의2제3항
87	제45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5조제4호
88			제7조제2항제4호
89			제8조제3항제3호
90			제9조제3항제3호
91			제9조의2제3항

연번	조번호	개정대상 조례	개정조문
92	제46조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1조
93			제12조제4항
94			제18조제3항
95	제47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1조제3항 전단
96	제48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16조제2항제1호다목
97	제4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4항
98			제19조의3제2항제2호
99			제25조제3호
100			제25조제5호
101			제28조제3항제2호가목
102			제28조제3항제2호나목
103			제28조제3항제3호나목
104			제28조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105			제29조제2호가목
106			제44조의3제3항
107			제58조의3제1항제2호
108			제59조제2항
109			별표 1 제1호의 표 마목(가)
110	별표 2 제4호의 제목		
111	제50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112	제51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113	제5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2조제3호
114	제53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7호
115			제10조제3항
116			제12조제4항제3호
117	제54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1항제2호
118			제26조의2제1항제4호
119	제55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2조제4항
120	제56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7호
121			제4조제6호
122	제57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123	제58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124			제5조제3호
125			제9조제3항
126	제59조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127	제60조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128			제17조제2호
129	제61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
130			제15조제2항
131			제15조제2항
132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133			제19조
134	제62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
135	제63조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12조제3항
136	제64조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137			제12조의 제목
138	제65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39조

연번	조번호	개정대상 조례	개정조문
139	제66조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140			제2조제2호
141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142			제3조제2항
143	제67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144			제34조제3항제1호
145	제68조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146			제3조제2항제3호
147			제7조제1호
148			제12조
149	제69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10조제2항제5호
150			제20조
151	제70조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5항제6호
152			제37조제3항
153	제71조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제1호
154	제72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7호
155			제10조제2항 단서
156			제10조제3항 후단
157			제14조제1항제3호
158	제73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4호
159	제74조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호
160			제17조
161	제75조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제6조제5항제1호
162			제6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163	제76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전단
164			제7조제2항제9호
165	제77조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
166	제78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호
167	제79조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제3호
168			제6조제4항제3호
169			제6조제5항
170			제7조제3항
171			제7조제4항제3호
172			제7조제4항제3호
173	제80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5호
174	제81조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제8조제3호
175	제82조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제6호
176			제6조제2항제11호
177	제83조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제6호
178			제5조
179	제84조	서울특별시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180	제85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4호
181			제25조제1항제2호
182			제52조제1항제2호
183			제56조제3항제4호
184			제56조제5항제3호
185	제86조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7호

연번	조번호	개정대상 조례	개정조문
186	제87조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187	제88조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3항
188	제89조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
189	제90조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190			제6조제2항제3호
191			제7조제4항
192			제9조제2항제5호
193	제91조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7호
194	제92조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195	제93조	서울특별시 서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호
196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197	제94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제2호
198	제95조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호
199			제4조제5호
200			제6조제3항제2호
201			제7조제1항제3호
202			제12조제3호
203			제15조제2항제4호
204			제18조제3항
205			제2조제3호
206	제96조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3호
207			제9조제1항제5호
208	제97조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제4호
209	제98조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제7호
210	제99조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211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212	제100조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7호
213			제12조제3항제16호
214			제17조제3항
215	제101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216			제9조제2항 단서
217	제102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7조제2항
218	제103조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2조제4항
219	제104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제7호
220			제5조제3항 본문
221			제15조제2항
222	제105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3조제5항
223	제106조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본문
224	제107조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225	제108조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
226			제7조제7호
227	제109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옹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제3호
228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229			제8장의 제목
230			제10조제1항
231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32	제110조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제3호
233	제111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호

연번	조번호	개정대상 조례	개정조문
234	제112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제4호
235			제18조의2제5호
236			제19조제4호
237			제19조제5호
238	제113조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39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240			제7조제2항
241	제114조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9조제6항제3호
242	제115조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3항
243	제116조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244			제5조제5호
245			제8조제2항제9호
246			제9조제2항
247			제11조제3항
248	제117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249	제118조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5호
250	제119조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 제5조제1항제6호
251			제5조제2항제5호
252			제5조제3항제2호
253			제8조제2항
254	제120조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4호
255	제121조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256	제122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4조
257			제39조제2항
258	제123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8조제2항제7호
259			제25조제6항
260			제26조제2항제3호
261	제124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본문
262	제125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5호
263			제6조제2항제5호
264			제8조제2항제5호
265			제9조제2항제5호
266			제11조제2항
267	제126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제제7호
268			제12조제3항
269	제127조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270			제5조제1항제4호
271			제5조제1항제16호
272			제5조제2항제11호
273			제7조제5항
274			제9조
275	제128조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
276	제129조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후단

연번	조번호	개정대상 조례	개정조문
277	제130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3호나목
278			제2조제3항제3호나목
279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가목, 제5호, 제8호, 제9호가목, 나목 및 마목
280			제6조제1항제3호, 제2항
281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282			제11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283			제23조제1항제2호
284	제131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4조
285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286			제18조제2항
287	제132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제8호
288			제13조제3항
289			제24조 본문
290	제133조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제5호
291	제134조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292	제135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사목
293			제9조제4항 본문
294	제136조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
295			제6조제7호
296	제137조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
297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298	제138조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제5조
299	제139조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3호
300	제140조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4호
301	제141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9조제5항
302	제142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8조제3호
303	제143조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제4호
304			제8조의2제1항제5호
305	제144조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2조제4호
306			제2조제8호
307	제145조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308			제2조제3호
309			제5조제2항제8호
310			제9조제1항제6호
311	제146조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312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313			제7조제4항 후단
314	제147조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315			제4조제1항
316	제148조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연번	조번호	개정대상 조례	개정조문
317	제149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9조제1항
318			제9조제2항
319			제27조제2항 후단
320			제37조제9항 후단
321			제47조제3항
322			제58조제1항제9호
323			제60조제1항제2호
324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
325			제150조
326	제13조제1항 본문		
327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		
328	제151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제5항 단서
329			제24조제1항제1호
330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까지
331			제25조제4항
332			제7조의2제3항
333	제152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제4항제3호
334	제153조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335			제11조제2항
336	제154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0조제1항제6호
337			제11조의2제2항제7호
338			제2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339			제26조제1항
340			제30조
341			제37조제1항
342			제155조
343	제156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의5제2항 단서
344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345	제157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2조제2항
346			제2조제3항
347			제7조제3호
348			제16조제3호
349			제18조의2제3항
350	제158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351	제159조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8호
352	제160조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6호
353			제10조제1항제4호
354			제11조제3항
355	제161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
356			제12조제3항제3호
357	제162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358			제8조의2제3항
359			제14조의 제목
360	제163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제6호
361	제164조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제2호

연번	조번호	개정대상 조례	개정조문
362	제165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호
363			제4조제1항제4호
364			제5조제1항제8호
365			제13조제2항
366	제166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367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368	제167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369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370	제168조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371	제169조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제4호
372			제6조제6호
373	제170조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374	제171조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4호
375	제172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376			제13조제6항
377			제17조제1항
378			제18조제1항
379			제20조의2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380			제23조제2항
381	제173조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
382	제174조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호라목
383			제7조제2호
384	제175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5조제2항
385			제12조제1항제3호
386			제15조제2항
387	제176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제3항
388	제177조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호
389	제178조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2조제6호
390			제8조제6항
391	제179조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호
392	제180조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중
393	제181조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394			제4조제2항 및 제5항
395			제5조제1항 및 제2항
396			제6조
397	제182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제2항제8호
398	제183조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호
399	제184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제6조의2제1항제2호
400			제13조 본문
401	제185조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3조제3호
402	제186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403			제5조제3항제5호
404			제6조제3항
405	제187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호
406	제188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단서
407	제189조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
408	제190조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제4호

연번	조번호	개정대상 조례	개정조문
409	제191조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제5호
410	제192조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411	제193조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
412	제194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제3호
413			제10조제2항
414			제11조제2항
415			제12조제1항
416			제14조제1조
417	제195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2항
418			제18조제2항
419			제20조제1호
420			제21조제1항제2호
421			제22조제2항
422	제196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
423			제22조제1항제5호
424			제23조제2항제3호
425	제197조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제6호
426	제198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0조제1항
427	제19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제1항제9호
428	제200조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429	제201조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19조제2항
430			제27조제1항
431			제28조제3항
432	제202조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호